

海外通商情報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 상무부, 한국산 CTV 제4, 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미 상무부는 1990. 6. 19 한국산 CTV 제4, 5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업체별 A/D 마진율 현황은 하기와 같음.

	제 3 차 최종판정률	제 4 차 예비판정률	제 4, 5 차 최종판정률	비 고
금 성	2.34	2.46	0.23	
삼 성	3.21	0.25	0.45	4 차
대 우	23.30	2.76	0.04	
퀀트로닉스	1.74	0.04	0	
코스모스	-	6.87*	2.24*	5 차
기 타	23.30		2.24	신규업체

*코스모스전자의 경우 대상기간은 5차 연례재심에 해당됨.

대상기간 제 4 차 : '86. 4. 1~'87. 3. 31
 제 5 차 : '87. 4. 1~'88. 3. 31

금번 판정률은 이전의 덤핑마진율 보다 낮은 것이나, 원화의 평가절상이 있을 경우 향후 판정시 덤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4개 대상업체(금성, 삼성, 대우, 퀀트로닉스)의 마진율이 0 혹은 0.5 이하이므로 판정이 발표된 날로 부터 대미 CTV 수출시 사전 현금예치는 필요치 않음. (de minimis)

코스모스전자의 경우 0.5%를 초과하였으므로 수출시 사전 현금 예치(cash deposit) 해야 함. De Minimis 판정의 다른 잇점은 3년 연속 De Minimis 판정을 받을 경우 미 상무성이 덤핑 명령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미 상무성

은 과거에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소위 공정 시장 가격이하로 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덤핑 명령조치를 철회한 적은 없음.

반덤핑 명령의 철회를 위해서, 업체는 상무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덤픽 행위가 없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미 상무성은 환율의 평가절상의 가능성이 있는 한 반덤핑 명령철회를 결정할 수 없음.

신규 수출업체는 덤픽마진율 2.24%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함.

제 5 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은 미 상무성이 제 때에 재심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금년 말 이전에 발표되리라고 예상키 어려움.

13" CTV가 반덤핑 케이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함. 반덤핑 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ITC가 상황변경으로 반덤핑 케이스와 관련된 CTV가 미국 CTV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함. (역사적 선례로 보아 ITC가 판정결과를 수정한 경우는 거의 없음.)

2. 미 상무부, 일본산 고출력 앰프 (High Power Amplifier)에 대한 AD 명령 철회 예상

관련 제피소 업체가 1990. 7. 31까지 행정재심을 반대 또는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는 상기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AD 명령을 철회할 예정.

행정재심을 4년 연속 요청하지 않거나, 덤픽

마진이 3년 연속 존재하지 않을 경우 AD 명령은 철회될 수 있음.

3. ITC, 대만산 Battery Powered Ride-On Toy Vehicles에 대한 337조 조사 개시

6.12 ITC, 상기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337조 조사 명령 발동. 제조업체는 Kransco of San Francisco사임.

4. SIA의 미·일 반도체 협정 갱신 요구로, 일본의 미국산 칩 사용 증가될 전망

SIA와 EIAJ는 6월 회의에서 일본이 자동차 및 통신장비에 미국산 반도체 칩 사용을 고려 키로 합의했음. 또한 양단체는 미국의 칩 제조업체와 NTT를 포함한 일본의 업계가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후원키로 합의했음.

1991년 7월에 종료될 예정인 미·일 반도체 협정에 따르면 미국측은 일본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일본 통산성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의 시장 점유율은 17.2%이나 WSTS(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990. 1/4분기에 13%로서 작년보다 0.1% 증가에 불과함. 미국의 경우 약 12.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음.

SIA는 일본측에서 내년까지 시장 점유 목표인 20%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협정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음.

5. 미·일 양국, 통신 시장개방에 합의

미·일 양국은 6. 27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장비, 네트워크 채널 단말장비(Network Channel Terminating Equipment), 국제 부가가치 통

신망 개방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 ISDN(종합정보통신망)의 시장개방 일정을 포함한 관련문제 협의는 7월 중순 예정임.

6. 일본, 미국과의 구조조정 협의(SII) 최종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지출을 63%까지 증가시키기로 동의

미·일 양국은 6월 28일 구조조정 협의(SII) 하 최종 보고서에 합의. 미국측의 가장 큰 성과는 일본이 '91년부터 10년간 전년 목표치보다 천억불이 증가한 2조8,000억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임.

뿐만 아니라, 일본 철도공사(Railway Co.)와 일본 전신전화사(NNT)는 25조엔을 추가로 투자할 것임. 이러한 공공투자공약은 1980년대 보다 평균 63%가 증가한 것인데 어떤 부문은 68%까지 증가한 수준임.

일본은 또한 수입 통관절차를 24시간내에 종료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독점적인 사업관행과 내부자 거래를 방지키 위해 관련법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확약했음.

대부분의 공공투자는 하부구조의 개선, 주택, 오물처리, 지대의 증가 등에 중점을 주어질 것임. 한국 전자업체는 일본에서 통신, 공항 및 항구 시설 건설 등 대규모 사업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 융통성 있는 소매제도, 수입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형주택 건축은 주방기기와 일본의 주택 소유자들의 기타 제품의 구매를 촉진 시킬 것임.

SII 보고서는 또한 구조장벽의 감축은 일본 내의 제품가격을 하락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며, 저가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일본 수출로 잇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미국측으로서는 재정적자 축소, 저축장려, 과학교육 지원, 대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 자유화, 독점 금지법의 개정을 공약했음.

미·일 양국은 년례 보고서가 발간되는 매년

봄 3년간의 SII 합의사항의 진전을 조사키로 합의.

7. 한국의 수입규제 운동이 양국 통상 문제로 발전시 전자산업분야가 보복대상 예상

한국의 수입규제운동은 계속하여 잠재적인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 정부관리는 공개적으로 수입규제 운동에 한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대하여 우려를 표시.

통상문제를 다루는 와싱턴의 유력 주간지인 International Trade Reporter지는 6월 27일자에서 미국 관료가 적어도 비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관련이 있다는 상황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하였음.

상무부 법률 자문인 웨인버만이 지난 6월 한국 방문시, 미국 냉장고가 3월 중순부터 매장에서 사라진 백화점을 들른적이 있음. 미국은 이 문제가 주요 통상현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나 버만의 한국 방문시 종결 예정이었던 JCCC 한·미 공동 산업협력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었음.

한국 관료들은 이러한 운동이 수입보다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말하며 축소시키려 노력하지만, 미국 관리들과 기업들은 한국 언론에 다루어지고 있는 수입과 한국 경제의 침체 사이의 연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함'. 그들은 몇년전 담배와 같은 외국 제품의 구매가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에서 실제 불법적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음.

이외에도 수출 초과국가가 수출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내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의 오랜 목표였음. 이것이 예를 들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의 요체였음.

한·미 통상마찰이 다시 나타날때, 한국의 전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전자

제품과 주요 가전기기가 수입 사치품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가전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미국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이 계속 미국시장을 침투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음.

8. 미국의 교역 대상국, GATT 보조금 협상에서 "산업목표(Industrial Targetting)"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에 반박

GATT 보조금 합의서에 "산업목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자는 미국측의 요구는 교역 대상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음.

일본은 즉각 산업목표 관행은 보조금 규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 목표를 보조금 합의서의 "새로운 관행" 규정에 내포되는 1개의 관행으로서 포함시키자는 미국측의 조치에 반대했음.

9. 미국의 전자부문 평가

1990. 4. 미 상무성이 발간한 "미국의 전자부문의 경쟁력 현황"에 의하면 전자산업은 미국경제에서 고용, 생산량, 수출, 기술혁신에서 볼 때 주요 성장분야임. 1988 전자제품 수출은 미국 전자제품 총 판매액 2000억불 중 390억을 기록.

전자분야는 고비용, 제한된 자본의 가용성, 훈련 및 과학교육의 취약, 업체간 협력을 규제하는 독점금지법 등으로 국내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외부로 부터의 도전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전자부문의 보호 기술이전 강요, 지적소유권 위반, 덤픽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임. 전자산업은 또한 전략적 경영철학의 부족, 제조 효율성 부족, 경쟁에 취약한 소규모 기업가의 생성으로 자체 비판 면치 못할 것임.

앞으로의 경쟁 동향에 관해서는 기업 차원에

서의 불공정 무역관행은 소프트웨어, Integrated Systems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파급될 것이라는 예측임.

세계 전자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은 극동 및 유럽이 될 것임. 컴퓨터 분야에서 일본은 이미 마이크로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서 거의 모든 제품 부문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 되었음.

일본은 현재 Optical Storage, Video Displays, Laser Printer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은 마이크로 컴퓨터와 주변 기기 분야에서 경쟁국이 될 것임. R&D 노력 결과에 따라 EC는 Parallel Processors에서 선두가 될 수 있음.

한국은 DRAM 생산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대만과 한국은 Handsets와 같은 특정 통신 제품의 주요 공급국임. 한국은 현재 반도체, 마이크로컴퓨터 및 Display Terminal을 포함, 여러 가전제품 분야에서 주요 경쟁국에 도전하고 있음.

10. 한국의 전자업체에 영향을 주는 통상현안(337조 관련)

가. TI/삼성전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워싱턴 사무소는 TI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우통신” 양사를 특허권 침해 이유로 달拉斯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음을 인정.

본 제소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과 Input/Output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8 가지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이 있음. 연방지방 법원에 제소함으로서 TI가 얻는 잇점을 ITC 제소 경우와는 달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이론적으로 법원 제소에서의 잇점은 대통령이 337조 판결을 번복할 수 있거나, ITC가 이러한 구제조치가 공공에 이익에 반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임.

법원 제소에 비교하여 ITC 제소의 잇점은 특정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임. 연방법원의 경우는 처리 시한이 없으며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많은 제소 건수를 고려하면, 소송의 진행이 매우 느리다는 것임.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부분의 사안이 ITC에서 12개월내에 종료되지만,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은 3~5년 소요된다고 추산하였음.

337조의 경우 역시 외국의 수출품이 미국의 지적 소유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되었을 시 이의 대미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제 명령을 허용하고 있음.

수입제품이 미국의 337조 절차에 따라 국내의 특허 위반제품보다도 매우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판정한 이후 GATT가 미국에 337조의 개정을 명령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임.

TI는 ITC에 제소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업급하기를 거부. 또한 주목할 일은 TI가 최근 주가에서 현재 9%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나. TI/아남건

ITC 위원들은 현재까지 한국의 아남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하여 몇몇 미국의 플라스틱으로 입힌 IC 수입업체에 대한 337조 제소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이 제소는 7월24일 전체 ITC 회의의 의제로 올라있지 않으나, ITC는 8월9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함.

다. SGS 톰슨/현대

본 조사 철회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를 위하여는 SGS 톰슨사가 ITC에 공식 요청해야 함. 현재 요청하였는지, 혹은 요청하였다면 ITC 내에서 어떤 단계인지 확인중임. 일단 요청이 이루어지면, 양사가 본 Case된 제기된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결정키 위하여 행정 심판관과 ITC 조사관들은 양사간의 협정 체결 내용을 검토해야 함.

11. 코콤 완화조치로 최신 통신기술의 대동구권 판매 허용될 듯

코콤 17개국의 합의로, 최신 전화교환 시스템과 관련 기술의 대동구권 판매가 허용될 예정임. 이러한 조치는, 기타 코콤 국가에 대하여 이 분야의 수출을 자유화 시키기로한 미국의 결정과 아울러, 총750억불 상당의 첨단 제품의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임.

6월에 코콤 회원국들은 지난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계획에 합의하였는데, 이 계획은 새롭고, 더욱 축소된 산업 규제제품의 리스트를 성안하는 것임.

코콤 회원국들은 금년 9월 15일까지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시안을 제출하며, '91년 1월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37개 품목 혹은 현재 규제품목의 1/3이 8월 15일까지 삭제될 것이며 이달초 이미 7개 품목이 제외되었다.

7월 1일 현재, 메인 프레임뿐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규제로 부터 해제됨.

하기 제품을 포함한 최신 통신기술의 대체코, 헝가리, 폴란드 판매를 허용하는 특별조치가 채택되었음.

- 광통신

- 마이크로웨이브 전송장치
- 풀 end-to-end 디지털 서�키틸 스위치
- ISBN
- 첨단의 장거리 및 지역 전화 서비스 위한 기타장비

또한 원자력과 SDI 응용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첨단 공작기계의 75%가 해제되었음.

수출통제가 해제된 특정 품목으로는 다음이 포함됨.

- Cathode Tubes & Swithches
- PCB 제조 혹은 시험장비
- Solid State Amplifier

- Fiber Optic Connector 혹은 캡슐 제조위한 공구 및 장착품

- 메탈롤링 제작기

- 부 품

- 액세사리, 소프트웨어

- 반도체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다이스, 웨이퍼

끝으로 코콤은 전략적으로 위협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하였음. 이러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일반 제외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 코콤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됨.

코콤 회의후 미국은 300억불에 달하는 첨단 제품의 대코콤 회원국 수출시 요구되는 허가 요건을 철폐한다고 발표. 이와 관련한 판매는 작년 상무부에 의하여 발급된 86,000개의 수출허가증 25,000개를 차지함.

미국 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나 계속하여 미국의 통제계획이 완화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음.

제기된 안의 완전한 시행보장을 촉구하는 것 외에, 업계는 미 상무부가 이 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서방국가간의 수출 허가 요건의 철폐와 아울러 다자간 성격이 아닌 재수출 금지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12. 다자간 통상협상그룹, 반덤핑 코드 개정안 제출

다자간 무역협정의 협상그룹은 7월 6일 반덤핑 코드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본 의견서는 특정 관행에 대해 강경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EC와 일본, 아시아 수출국들 간의 타협 시도를 의미함.

미국, EC는 반덤핑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우회덤핑 및 상습덤핑 위반자에까지 확대시키며 특정사안의 경우 반덤핑 관세의 소급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되기를 희망, 이에 반하여 아시아 수출국들은 반덤핑 코드가 보다 장기의 원가 회

수기간과 더욱 적극적인 마켓팅 활동을 수용하기를 희망.

통상협상 위원회(TNC)는 7월23일 우루파이 라운드의 종료를 앞두고 각 협상 그룹들간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회동할 예정임.

미국의 여러 산업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들(Congressional Caucuses)은 부시 대통령과 제네바 통상 대표단에 보낸 서한에서 협상그룹이 제출한 반덤핑 코드 개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 의회 대표들은 미국이 상기안을 협상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을 거부토록 촉구.

미국 업계는 협상그룹의 반덤핑 코드 개정안은 덤픽 및 피해 입증을 매우 어렵게 만들며, 원가이하 판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구실을 준다고 주장.

본 반덤핑 코드 개정안이 우회덤핑, 상습덤핑 위반자, 반덤핑 관세 소급 부여 등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 반덤핑 분야에서 희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13. 한국, GATT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에 5억불을 초과하는 정부구매시 외국 기업의 참여 제의

한국은 GATT 정부조달 협정의 가입을 신청하며 5억불 이상의 공공구매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안.

한국의 정부 조달 협정 가입으로 외국인 기업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전기통신공사(KT A) 및 한국주택공사(KNHC) 등 총37개 정부기관의 정부 구매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이 정부기관들의 년간 총 구매금액은 US \$ 572Mil로 구매금액상으로는 협정 가입국 중 4~5위를 차지하게 됨.

한국은 또한 이러한 기관들의 구매에서 외국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예외사항을 GATT가 허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사항으로는 정부 구매계약의 1%를 중소기업체가 맡도록 하는 현재의 요건유지, 북한으로부터 우선적인 구매허용, 군사목적의 비상구매가 포함됨.

한국은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4대 공급국이며, 한국이 GATT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은 통신시장을 개방키로한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임.

미국은 별도의 조치로서 6월말 정부구매안을 GATT에 상정했음. 정부조달이 공식적으로 우루파이 라운드의 일부는 아니지만,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들은 우루파이 라운드가 종료되는 같은 시점에 완성될 보다 포괄적인 정부조달 약정서를 추진키로 합의했음.

미국, EC, 캐나다는 이러한 성격의 정부조달 약정서를 추진해 왔으나 일본은 매우 소극적이었음. 다른 2개 정부조달 가입국인 홍콩과 싱가폴은 보완된 정부조달안이 다른 협상그룹에서 협의중인 서비스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음.

미국의 주목적은 물, 에너지, 운송, 통신분야, 특히 전화, 중전기 설비사업 등 정부통제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 허용 문제에 대하여 EC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임.

이의 맷가로,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규제와 관련이 없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서가 외국인 입찰 참여자를 차별치 않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음.

14. EECA, 삼성전자 DRAM 반덤핑 제소

유럽 전자부품 제조자 협회(EECA)가 삼성전자가 DRAM 제품을 EC 시장에서 덤픽한 혐의로 제소하였음이 확인됨.

금년초 EC 집행위와 11개의 일본 DRAM 제조업체들이 Price Undertaking에 합의하며 EC에서의 DRAM 판매 최저가격을 결정한 바 EECA는 삼성이 Price Undertaking을 이용하여 상기 최저가격 이하로 판매하였다고 주장.

EECA는 삼성이 동등한 Price Undertaking 을 제의하여 동일한 최저가격을 준수하기를 원하고 있음. 집행위는 현재 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 회원국 정부들에게 제소장 사본을 송부하여 8월 중순까지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음.

영국은 이와관련 입장을 정립하지 않았으나 조사개시에 반대할 것 같지 않으며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조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삼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모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성이 높음

15. EC, 한국·대만산 신발류 사전 감시

'90. 7월부터 한국·대만산 신발이 EC에서 자유유통되기 위해서는 사전 감시 절차를 밟게 되며 따라서 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 회원국이 발행하는 수입서류를 제시해야 함.

수입서류는 수입업자로 부터 신청이 있으며 그후 5일 이내에 회원국 정부가 무료로 발행하는데 수량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됨.

각 회원국 정부는 매월 수입서류를 발행해 준 물량을 집행위에 통보하여 전반적인 상황의 모니터링이 가능케 함.

16. 외국 무역협회, 한국산 카라디오에 반덤핑 관세부과 반대

외국 무역협회(FTA)는 한국산 카라디오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반대를 표명. 고질의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EC 산업은 한국산 저가모델에 대해 피해 주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소비자들은 값비싼 카라디오나 썬모델을 구입할 선택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FTA는 소매업자 특히 대형 독일의 통신판매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

17. GATT 반덤핑 코드에 대한 태협안

GATT 반덤핑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이 우루파이 라운드에서 진행중. 우회수출(Circumvention)과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Code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미국/EC와 다른 한편으로 반덤핑 규제조치의 남용을 더욱 어렵게 하도록 개정을 원하는 일본/NICS 국가들간에 장기적인 의견 대립이 있음.

비공식 협상의 결과 GATT 사무국에 의해 태협안 초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관세의 회피(예, 현지조립을 통해)를 방지하는 해결책을 도입하며 또한 기술적인 규정들을 엄격히 하여 반덤핑 절차의 오용의 여지를 줄이도록 하는 것임.

현지 조립에 의한 관세회피 문제에 대해 반덤핑법을 효과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EC가 GATT 분쟁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한 EC의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 규정을 포기하는데 선행 조건임. 그러나 EC와 미국은 그 대신 다른 규정들의 강화를 양보하기는 원치 않는 것임.

태협안은 '구성가격'의 설정을 제한하고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이 가중 평균치로 설정 비교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현재 EC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선별된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있음)

일본과 NICs 국가들은 동 태협안이 반덤핑 규제조치의 오용을 방지하는데 충분치 못하다고 반대하였으나 우회방지에 대한 미국의 제안은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그들이 현재 덤플링위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보호조치(Protection)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반덤핑 개정도 지지할 수 없음을 시사.

반덤핑법 개정에 대한 합의 초안의 7월중 작성은 어렵고 8월중에 태협안을 재검토 개정초안이 작성될 것으로 보임.